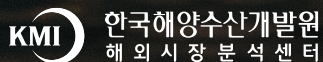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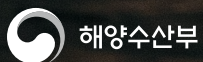




정책·규정

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(MMPA)의 이해

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가이드



미국, 해양포유류보호법(MMPA) 파헤치기

01

해양포유류보호법 (MMPA: Marine Mammal Protection Act)

- ④ 1972년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무의미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발효된 법
- ④ 2017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도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동일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'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산물 수입시행규정에 관한 규칙' 이 발효되었으며, 2023년부터 시행 예정



02

해양포유류보호법이 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

- ④ 2023년부터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은 수출 불가
- ④ 해양포유류 혼획이 발생하는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은 미국으로부터 '동등성평가' 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출 가능
- ④ 미국,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별 어업을 분류한 해외어업목록(LOFF) 추후 발표 예정



미국, 해양포유류보호법(MMPA) 파헤치기

03

해외어업목록 (LOFF: List of Foreign Fisheries)

- ④ 미국 해양대기청(NOAA)이 對미국 수산물 수출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어업을 자체적으로 분류한 목록
- ④ 해양포유류 혼획 여부를 기준으로 '수출어업', '면제어업', '중간재' 로 분류



수출어업
Export Fishery



면제어업
Exempt Fishe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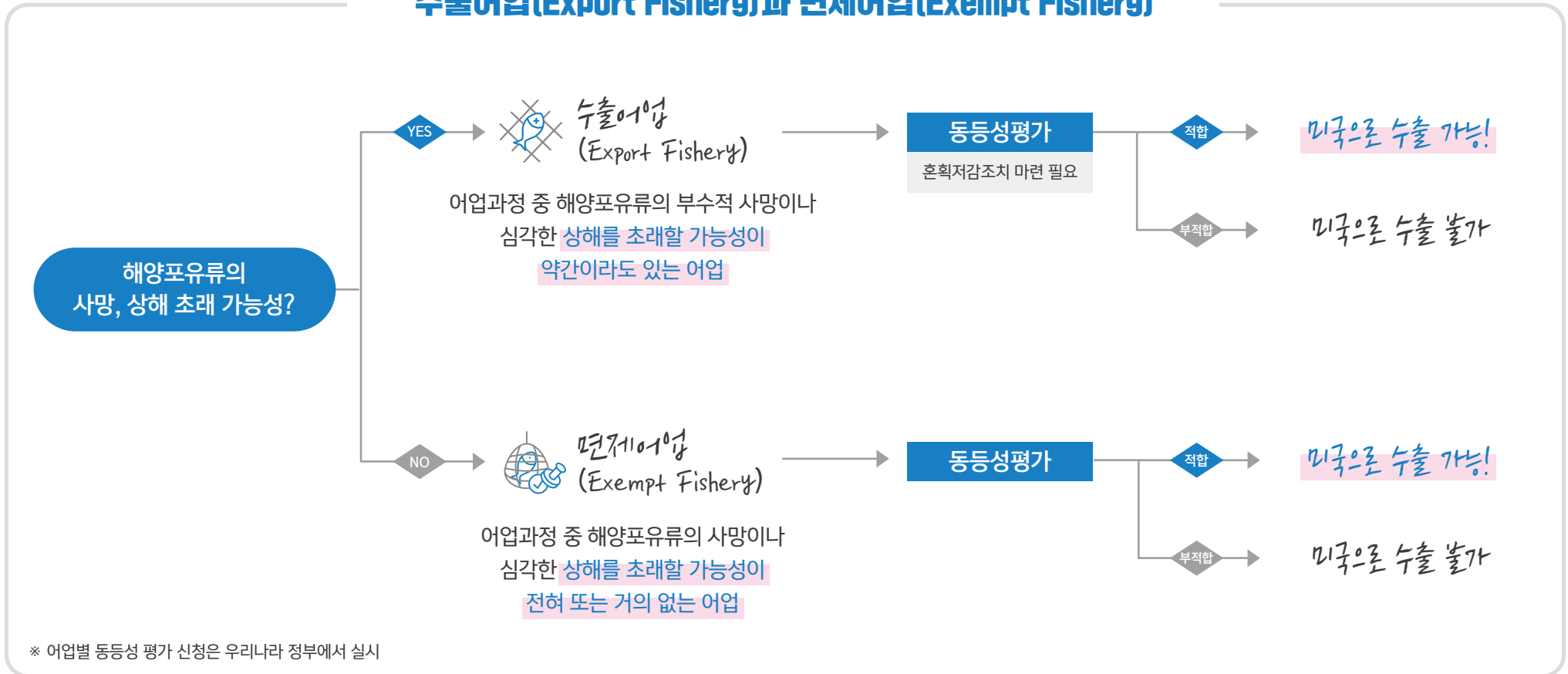


중간재
Intermediary

미국, 해양포유류보호법(MMPA) 파헤치기

04

수출어업(Export Fishery)과 면제어업(Exempt Fishery)



미국, 해양포유류보호법(MMPA) 파헤치기

05 중간재 (Intermediary)

“ 제3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후 가공 또는 원물 상태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 ”

- ④ 제3국 정부에서 미국으로부터 해당 원료에 대한 동등성 평가 적합 판정 필요
- ④ 제3국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관련 서류 미비 시, 우리나라에서 수입가공하여도 미국으로의 수출 제한



미국, 해양포유류보호법(MMPA) 파헤치기

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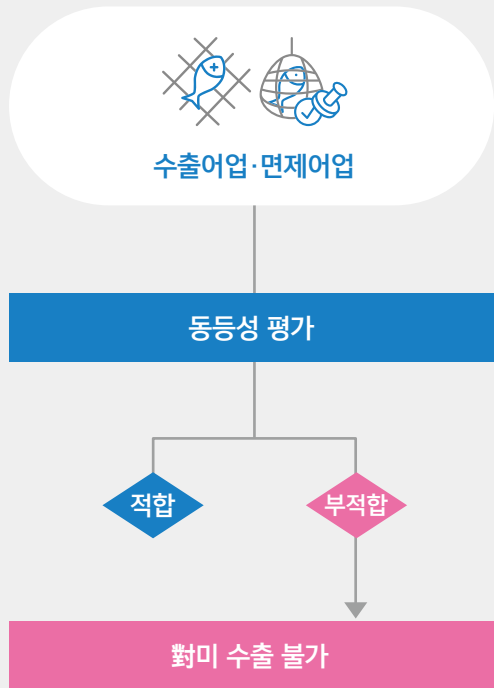
동등성 평가

- ☑ 동등성평가는 수출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·이행하고 있는지,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프로그램의 향후 성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국가단위로 평가
- ☑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나, 해양수산부는 혼획 저감조치 개발연구 추진, 혼획 저감장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등 동등성평가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한 후속조치 추진
- ☑ 동등성 평가 신청은 2021년 11월까지 가능, 이후 4년마다 재평가가 이루어질 예정

미국의 해외어업 동등성 평가 충족 기준			
항목	자국 수역	제3국 수역	공해
어업 등록	✓		
해양포유류 자원 평가 및 혼획 평가	✓	✓	
보고 및 모니터링	✓		
혼획 제한 기준 산정	✓	✓	
혼획을 기준 이하로 저감하기 위한 규율 개발	✓	✓	
혼획저감계획	✓	✓	✓
지역수산가구 또는 기타 정부간 협정		✓	✓
동등성 평가를 위한 효과성에 관한 대인적 조치	✓	✓	✓

미국, 해양포유류보호법(MMPA) 파헤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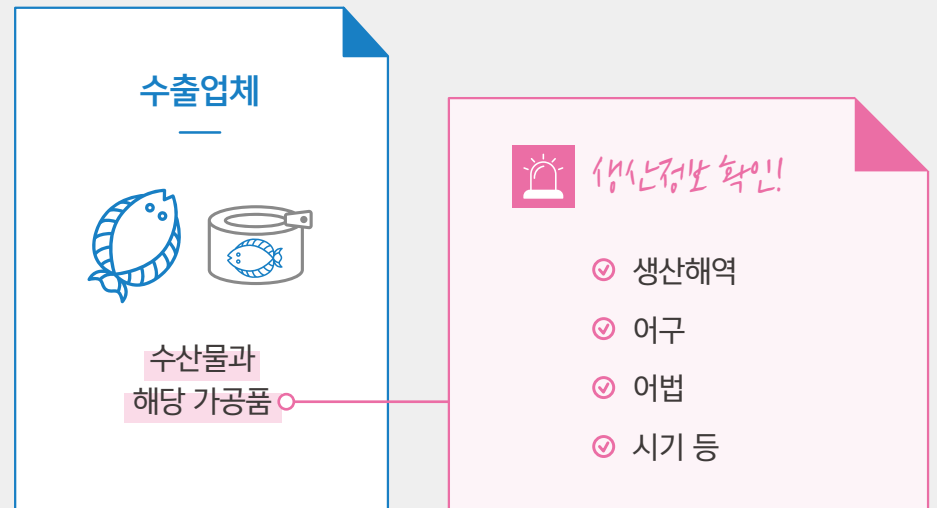
對미국 수출 불가 기준



*2023년부터 시행

對미국 수출을 위해 확보해야할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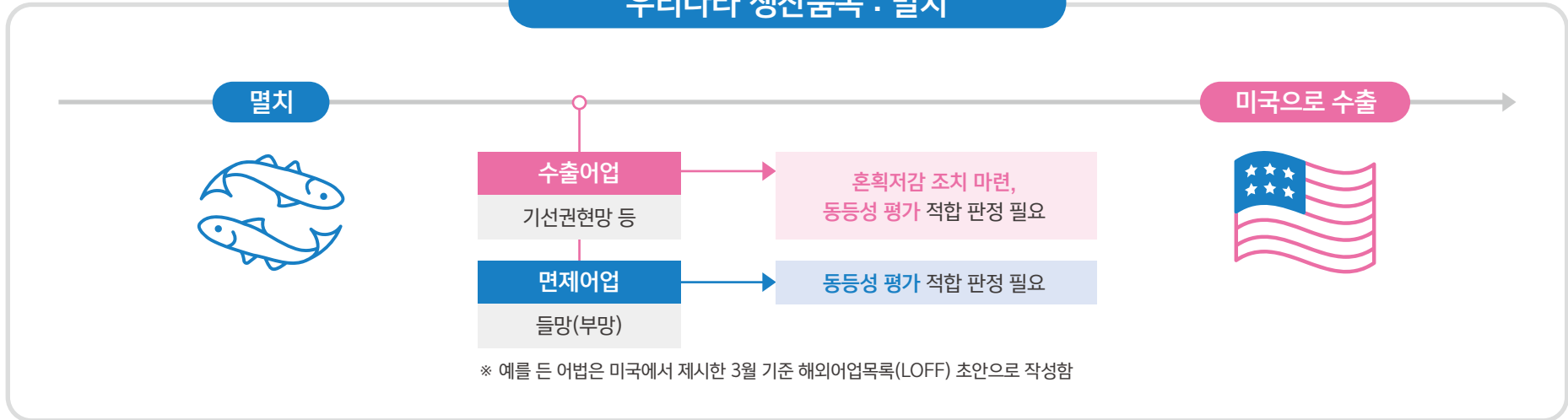
☑ 원활한 對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업체에서도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생산해역, 어구, 어법, 시기 등과 같은 생산 정보 확보 필수!



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(MMPA) 적용사례 및 준비사항

01

우리나라 생산품목 : 멸치



- ☑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
- ☑ 대표적으로 멸치는 국내 생산어법에 따라 수출어업과 면제어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
- ☑ 기선권현망 등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법으로 어획된 멸치의 경우 미국과 동등한 정도의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조치를 마련하고, 동등성 평가 적합 판정 시 수출 가능
- ☑ 반면, 들망(부망)으로 생산된 멸치는 면제어업으로 동등성 평가 적합 판정 시 수출 가능

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(MMPA) 적용사례 및 준비사항

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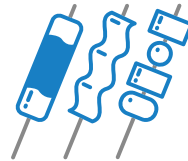
수입품 가공수출 품목 : 어묵

베트남, 인도 등
연육 수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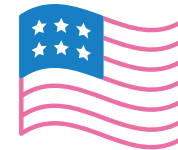


한국

연육 제품으로 가공



미국으로 수출



- ① 연육 수입국(베트남, 인도 등)에서 미국으로부터 동등성평가 적합 판정 시,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산 연육을 가공한 어묵 수출 가능
- ② 동등성평가 부적합 판정 시, 미국으로 수출 제한

- ③ 해외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,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
- ④ 대표적으로 어묵은 베트남 등 제3국으로부터 연육을 수입,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
- ⑤ 수입한 연육의 원료가 미국의 동등성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이면 수출 가능
- ⑥ 제3국에서 동등성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, 해당 원료를 사용한 어묵 미국으로 수출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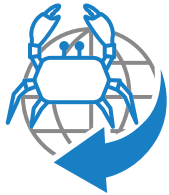
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(MMPA) 적용사례 및 준비사항

03

수입 재수출 품목 : 게

러시아

게 수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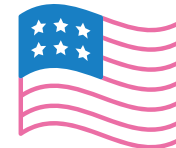


한국

수입 후 재수출



미국으로 수출



- ☑ 게 수입국(러시아)에서 미국으로부터 동등성평가 적합 판정 시, 한국에서 미국으로 게 수출 가능
- ☑ 동등성평가 부적합 판정 시, 미국으로 수출 제한

- ☑ 해외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그대로 재수출하는 품목
- ☑ 대표적으로 게의 경우, 사례2와 마찬가지로 해당 품목이 미국으로부터 동등성평가 적합 판정 시, 수출 가능

해양포유류보호법[2023년 본격 시행]

원활한 對미국 수출을 위해서는
수출업체에서 해당 원료의 생산정보
(해역, 어구, 어법, 시기 등)를
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필수!

※ 본 내용은 2020년 3월까지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,
향후 해양포유류보호법(MMPA) 개정 동향에 따라 시행 시기나 세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

한국해양수산업계의 활로 개척,

**한국해양수산개발원
해외시장분석센터가
함께 합니다.**

Thank you!